

양진초 · 중학교 인근 골프연습장 설치 반대 청원

2005. 6. 24
도시관리위원회

1. 경과

- 청원자 :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7 현대파크빌 1003-703 남상덕 외 3,421인
- 소개의원 : 유승주의원(교육문화위원회)
- 접수일자 : 2005. 5. 19.(92번)
- 회부일자 : 2005. 5. 23.
- 상정일자 :

제156회 임시회 제2차도시관리위원회(2005. 5.27) 상정, 취지 설명, 검토 보고, 질의 답변
제28회 정례회 제2차도시관리위원회(2005. 6.24) 상정, 의결

2. 청원요지

-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골프연습장 건설에 대한 강력한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음
에 불구하고 광진구청은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
- 골프연습장 건설의 타당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무시한 행위
이며 골프장 사업성조차 검토되지 않는 탁상행정의 표본임
- 서울시 도시계획에 위반될뿐더러 전체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전혀 아님. 또한 시
공사 선정과 관련된 의문이 존재함.

3. 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

- 광진구청은 유해시설인 청소차량차고지 설치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주민들에게 골프연
습장을 설치하고, 골프연습장을 광진구청의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 했다고
밝히고 있으나 학교 인근에 입지하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
- 그러나 계획된 골프연습장이 대다수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혐오시설이 될 것
이며, 광장동에는 기존에 골프연습장이 많이 있고 대다수 손실이 발생되는 상태이기
에 구청의 수익사업이 될지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음
- 위와 동일한 견에 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보면, 경기도는 부시장·부군수
회에서 시·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주거지역내 실외 골
프연습장 설치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한 사례가 있고, 국회에서도 학교인
근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금지하는 입법 움직임이 있었음
- 따라서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하는 골프연습장 건설은 승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
며, 숲을 훼손하여 건설하고 있는 청소차량차고지 인근을 시민공원이나 체육공원 조
성하는 등 서울시 도시계획에 맞추는 것이 타당함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안석수)

- 본 안건은 광진구 광장동 산81-3일대 15,934m²의 공공청사를 폐지하여 공원, 녹지, 체
육시설(골프연습장)로 변경하고, 광장동 577-3일대 3,000m²를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
하는 내용으로 기상정되어 계류 중인 의안번호 684번 의견청취건과 동일 내용임
- 공공청사 폐지 대상지와 기준의 주차장 부지는 2002.8.27 최초 결정된 후 타 구(성동
구) 관내에 소재한 청소기반시설을 한 장소에 집약처리하기 위해 지하에 주차장을 조
성하는 중임. 지상에 골프연습장을 복합설치하고, 주변에 완충녹지 및 공원을 조성
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입안되었음
-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청사를 폐지하여 공원, 녹지,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것
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. 다만 체육시설(골프연습장)로 결정하는 것은 청소차고지
등의 효율적 관리 및 자치구 재정 확충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으나 열람공고시 주
민들이 제출한 의견과 같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에 일부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것도

사실이므로 체육시설(골프연습장) 설치문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사항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

질의) 타석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와의 거리는?

답변) 1005동과는 약 60m입니다만 타석과는 반대방향입니다.

질의) 골프장 구조물의 죄고 높이는 어느 정도입니까?

답변) 바닥에서 48m로 인근 아파트보다는 높습니다. 중간에 30m 정도의 동산이 위치하고 있으며, 그 상부에 조경 등을 시설하여 최대한 차폐하므로 민원은 해소되리라 봅니다.

6. 토론판요지 : 없음

7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의 요지 : 소위원회 구성 없음

8. 심사결과 :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1. 의견서 : 별첨

의 견 서

청원명 : 양진초 · 중학교 인근 골프연습장 설치 반대 청원

처리하여야 할 기관 : 서울특별시장

채택의견

-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인근 주민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득하여야 함.
- 공공청사 폐지 대상지와 기존의 주차장 부지는 2002.8.27 최초 결정된 후 타 구(성동구) 관내에 소재한 청소기반시설을 한 장소에 집약처리하기 위해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중임. 지상에 골프연습장을 복합설치하고, 주변에 완충녹지 및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임안되었음
-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청사를 폐지하여 공원, 녹지,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. 다만 체육시설(골프연습장)로 결정하는 것은 청소차고지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자치구 재정 확충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으나
- 열람공고시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과 같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골프연습장이 아닌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로 결정할 것.